

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현재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증가, 청년실업 등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청소년·청년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일은 비단 어느 한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 해당 지역사회,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나야 할 중대한 과제이자 책무가 되었음.
- 나. ‘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’ 사업은 청소년·청년들의 문제를 마을 안에서 보듬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시작 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주민들 역시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됨.
- 다. 현재 강북구 인근의 경우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여건은 갖춰졌으나 청소년·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, 동북권역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마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배움공간을 조성하고,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마을배움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주체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며,
- 라. 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설치·운영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
- 시설규모 : 지상 3층 (연면적 307.36㎡)
- 소재지 :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31-6(우이동 170-10)
- 공간구성(안) : 마을학교, 청소년 대안학교(주말학교), 청년 직업체험 카페, 다목적홀 등



〈위치도〉



〈사진〉

- 개소일자 : 2017. 12월(예정)
- 이용대상 : 청소년, 청년, 마을주민 등

나. 위탁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사무 :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시설 관리·운영 일체
 - 리모델링 및 설계 참여, 개소 전 시범사업 운영
 - 청소년·청년들의 마을살이 경험확대, 상호 돌봄을 통한 주체적 성장 도모
 - 동북권역 지역 환경에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

- 마을학교 거점공간 운영 및 마을배움 운영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
- 주민·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
-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소요예산 : 연간 450백만원 (2018년 예산편성 추진)
- '18년도부터 인건비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한 예산 편성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-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7조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마을배움터 운영은 청소년 배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,
-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·실행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지속가능한 마을배움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배움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성 및 다수의 사업경험이 필요하며, 이는 관 주도로 시행되기 어려움.
- 또한 주민 참여를 제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

제27조(마을공간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,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“마을배움터” 및 “마을활력소”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“마을배움터”는 마을배움과 돌봄,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
2.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
3.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
4.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
5.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“마을배움터” 및 “마을활력소”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조성팀 김승희 (☎ 2133-6344)